

채권관련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중심으로 -

문성훈** · 오문성***

〈요 약〉

본 논문은 현행 채권 과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뿐만 아니라, 2023년 이후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 중 채권관련 금융상품에 적용될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따라 보완하거나 개편되어야 할 채권 관련 금융상품 과세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채권관련 금융상품 과세제도는 첫째, 채권 보유기간 이자소득 과세제도로 인한 조세효율성 저해 및 국제적 정합성 미흡, 둘째, 채권 발행할인액 이자소득 과세로 인한 경제적 실질 왜곡, 셋째, 채권의 경제적 실질이 아닌 채권 종류에 따른 채권소득 과세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편, 새로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는 포괄적 금융투자소득 개념 도입, 금융상품간 조세중립성 제고 등을 통해 기존 금융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도 불구하고 채권 관련 금융상품은 채권유형별로 상이한 과세취급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 보유기간 과세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채권 관련 금융상품의 자본차익 분류 및 계산의 불합리성이 존재한다. 더욱이 채권 관련 금융상품과 다른 금융상품간 조세중립성 훼손 문제도 여전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 채권 관련 금융상품의 분류를 일원화하고 채권 소득금액 계산을 단순화하고 합리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채권과 다른 금융상품간 조세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채권 과세제도, 채권 발행할인액, 채권보유기간 과세제도, 금융상품간 조세중립성, 경제적 실질

* 본 논문은 2021년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전문가 네트워크 사업』(문성훈(2021), 채권관련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중심으로-)에 기초한 논문임.

**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mooncta@hallym.ac.kr, 주저자

***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cpaos@daum.net, 교신저자

I. 서 론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의 채권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과세하지만 자본차손익은 일반적으로 과세하고 있지 않아 주식,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성이 문제되고 있다. 한편 전통적인 채권의 자본차손익은 과세하지 않지만 파생결합증권의 보유 또는 환매 시 발생하는 자본차손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고, 전환사채 등 양도 시 자본차손익 성격이 있는 상환할증금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등 채권의 종류에 따라 과세상 차이가 있다.

이에 문제인 정부는 이러한 금융소득과세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채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상품의 양도소득 과세를 확대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¹⁾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통해 기존에 비과세되고 있던 소액주주 상장주식뿐만 아니라 채권의 양도소득도 과세하고, 상장주식 등 그룹과 기타 금융투자상품 그룹으로 구분하여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합산하여 과세표준에 따라 20%와 25%의 세율로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할 예정이다. 한편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섭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포괄적 금융투자소득의 개념을 도입해 금융상품 간 조세중립성을 제고하고, 기존의 복잡하고 일관성 없는 금융상품의 소득구분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단순화하여 자본시장의 과세체계를 합리적이고 이해가능한 방향으로 설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열거주의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는 「소득세법」하에서 금융투자소득에만 포괄주의를 적용할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체계 정합성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그룹 간 소득공제 수준이 크게 차이나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성에 대한 의의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하에서도 채권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소득과세가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구분하여 다르게 과세하고 있어 소득 간 불공평 및 소득종류 변경에 따른 조세회피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은 경제적 실질이 여러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고 금융상품의 설계에 따라 소득유형별 전환도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양도 시 현행 채권보유기간 이자소득과세제도에 따라 이자소득과 자본차손익인 금융투자소득을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문성훈 2020, 26). 또한 금융투자소득세체계에서는 포괄적 금융투자소득 개념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하기보다는 「자본시장법」상 분류에 맞추어 채권과 파생결합증권을 구분하여 과세할 예정으로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채권뿐만 아니라 매자년채권, 파생결합증권, 상장지수채권 등

1) 윤석열 정부는 금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세제개편안을 2020년 7월 발표했으나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야당이 시행유예를 반대하면서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본 원고는 2023년에 시행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서술하고자 함

구조화채권과 같은 혼성채권을 포함한 채권 관련 금융상품의 현행 과세제도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내용을 과세대상, 과세소득 구분 및 계산방법, 세율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제도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따라 보완하거나 개편할 채권 관련 금융상품 과세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금융투자소득세의 주요 내용

정부는 2020년 6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한 후 2020년 세법 및 동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3년 이후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자본차손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금융투자소득 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법률 제17925호 및 대통령령 제31442호, 이하 ‘2023년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금융투자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이 분류하고 있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분류에 새롭게 추가되는 소득이다(2023년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2의2).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은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파생상품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으로서 국내상장주식 양도차익뿐만 아니라 채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의 양도, 환매, 상환차익을 포괄하고 있다. 국내상장주식 등 그룹과 기타 금융투자상품 그룹별로 각각 5천만원,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한 후 그룹별 손익을 통산한 후 최종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5년간 이월공제한다.

금융투자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하 ‘주식등소득금액’), 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하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하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국내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이하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및 파생상품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이하 ‘파생상품소득금액’)의 여섯 가지 소득을 합한 금액이다.

주식등소득금액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출자지분을 말하며,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 『소득세법』상 부동산 관련 주식은 포함되지 않는다(2023년 『소득세법』 제87조의2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0조의2 제1항). 채권등소득금액의 대상이 되는 ‘채권등’은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 증권예탁증권 중 채무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이자 또는 할인액이 발생하는 증권을 말하며, 『자본시장법』상 조건부자본증권과 양도성계금증서 또는 어음이 포함된다(2023년 『소득세법』 제87조의2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0조의2 제2항). 집합투자소득금액은 집합투자증권의 양도소득금액뿐만 아니라 적격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액을 합한 금액이다(2023년 『소득세법』 제87조의14 제1항). 파생결합증권의 소득금액도 파생결합증권의 분배금액과 파생결합증

권의 상환·환매·양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 즉 양도소득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2023년 「소득세법」 제87조의15 제1항). 각각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주식과 투자계약증권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고, 채권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보유기간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다. 한편 집합투자기구와 파생결합증권은 금융투자소득금액은 양도소득금액과 분배금(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금에 한함)으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파생상품은 선물, 선도, 스왑, 옵션에 대해 계약 시 약정가격, 최종결제가격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금융투자소득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하며,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과 기본공제금액을 차례대로 차감하여 계산된다(2023년 「소득세법」 제87조의4). 국내상장주식 등 그룹과 기타 금융투자상품 그룹으로 구분하여 국내상장주식 등 그룹은 5천만원, 기타 금융투자상품 그룹은 250만원의 기본공제²⁾를 적용한다. 국내상장주식 등 그룹에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에 상장된 주식과 ETF를 포함한 공모 국내주식형펀드가 포함되고, 기타 금융투자상품 그룹은 해외주식 및 비상장주식, 공모 국내주식형펀드 이외의 펀드,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채권 등 국내상장주식 등 그룹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금융상품에 포함된다.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은 각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 중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으로 확정신고, 결정 및 경정 또는 수정신고에 의해 확정된 결손금에 한한다(2023년 「소득세법」 제87조의4 제2항).

금융투자소득의 세율은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를 적용(2023년 「소득세법」 제87의19)하며, 투자기간의 장단기 여부에 따라 세율이 차이나지는 않는다. 국내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경우 5천만원의 기본공제수준을 감안할 때 실제 세율구조는 양도차익이 5천만원까지는 0%, 5천만원에서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하는 25%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2) 2023년 「소득세법」 제87조의18(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①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할 금액 :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가. 주식 등 소득금액 중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 나. 주권비상장법인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 다.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2. 제1호 외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할 금액 : 250만원

III. 현행 채권 관련 금융상품 과세제도

1. 현행 금융상품 과세제도

채권 관련 금융상품 과세제도를 검토하기 앞서 채권을 포함한 현행 금융상품 과세제도를 소득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금융상품³⁾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과세방법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은 금융소득의 성격을 크게 이자와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양분하고, 전자(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반면 후자(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대부분 과세를 면제하고 있다.

〈표 1〉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른 금융소득의 구분

구 분			이자·배당소득	양도소득(자본이득)
수신상품			이자소득	—
보험상품			이자소득	—
금융투자상품	증권	채무증권	이자소득	비과세 ¹⁾
		지분증권	배당소득	부분과세 ²⁾
		수익증권	배당소득	—
		ELS, DLS	배당소득	—
		ELW	—	과세
	파생상품		—	부분과세 ³⁾

주 : 1) 채무증권 양도 시 채권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과세

2) 비상장주식 등의 자본이득은 과세함

3) 주식시장지수형 상장파생상품, CFD, 해외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자본이득은 과세함

3) 종류별 증권의 「자본시장법」상 정의는 다음과 같다(「자본시장법」 제4조 제3항에서 제8항).

- 채무증권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
- 지분증권 :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회사·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
- 수익증권 : 제110조의 수익증권(신탁업자의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 제189조의 수익증권(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 투자계약증권 :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금융투자상품 중 지분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자본이득)으로 구분된다. 「소득세법」은 배당소득 규정 시 원천이 되는 자산의 성격 대신 지급받는 지급금의 성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해당 법인이나 단체의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지급금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규정한다. 「소득세법」상 ‘주식 등’(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개념은 「자본시장법」상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증권 및 조합의 출자지분 등 「자본시장법」상 지분증권의 개념을 포함한다. 외국 법인의 지분증권(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이 경우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지 않고(무조건 종합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대주주양도분, 장외 거래양도분 및 비상장주식양도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대주주의 범위 확대라는 방식으로 그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왔다. 동일 과세기간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통산이 허용되지만, 통산 후에 남은 양도차손은 이월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외국거래소 등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과세하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해외주식 간의 양도차손익의 통산뿐 아니라 국내주식과의 양도차손익 통산도 허용된다.

금융투자상품 중 집합투자증권의 「자본시장법」상 정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이고, 집합투자기구의 정의는 ‘집합투자’⁴⁾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이다.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에 대해서도 이중과세의 가능성이 있지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투자자 단계의 배당소득 과세’로 과세문제를 종결한다.

- a.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일 것
- b. 매년 1회 이상 결산하고 그 이익을 분배할 것
- c. 금전이나 금전으로 평가되는 자산에 의한 투자일 것
- d.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이 집합투자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신탁형과 조합형으로부터의 이익은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발생한 소득의 원천에 따라 과세하고, 회사형과 동업기업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법인세도 과세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상품 과세제도는 금융상품별, 금융소득별로

—과생결합증권 :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증권예탁증권 : 이상의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4)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의 정의는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정한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이다(집단성 및 간접성 특징).

칸막이식으로 차별과세되고,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이 허용되지 않아 조세중립성이 저해되고 있다. 주식의 양도소득은 상장 여부, 지분율 및 시가총액 등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10~3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주식의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14%의 소득세율로 과세되고, 이 자소득과 다른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 시 최고 45%의 세율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등 소득 종류에 따라 차별적으로 과세하고 있다. 채권 등 주식을 제외한 금융상품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본차손익(capital gain) 성격의 소득을 포함하는 ELS, 펀드 등 환매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다. 현행 세법상 배당소득은 손실이 인정되지 않아, 과생결합증권 등의 배당소득은 경제적 실질이 양도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과세기간 내에 과생결합증권 등의 투자손실도 투자이익과 통산되지 않아 금융상품 간 손익의 수평적 통산이 불가능하다(문성훈 2020, 9).

또한 금융상품의 투자이익은 과세되는 반면, 투자손실은 이월공제가 불가능해 전체 투자기간 차원에서의 과세형평도 침해되고 있다. 예를 들어 비상장주식 또는 대주주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모두 과세되지만, 양도손실이 발생한 경우 양도손실이 발생한 연도에만 공제되기 때문에 양도소득과 양도손실의 과세상 취급이 대칭적이지 않다(문성훈 2020, 10).

그리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직접투자하는 경우와 펀드 등을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 다음 표와 같이 과세상 차이가 발생한다.

〈표 2〉 직접투자자와 간접투자자간 과세방식 차이

구 분		직접투자	간접투자
주식 양도소득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만 과세	비과세
	국내 비상장주식	과세 (양도소득)	과세 (배당소득)
	국내 벤처기업 주식	비과세	비과세
	해외 주식	과세 (양도소득)	과세 (배당소득)
채권 양도소득/평가이익		비과세	과세 (배당소득)

한편 간접투자자의 경우에도 펀드는 상장주식 매매 및 평가차익을 제외하고 모든 평가차익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연금에 포함된 금융상품의 소득은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는 반면, 특정 신탁 등은 직접투자자와 유사하게 과세하는 등 간접투자방법이나 투자기구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고 있다(문성훈 2020, 11).

2. 채권 과세제도 개요

현행 「소득세법」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채권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이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고, 채권의 자본차손익(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다. 「소득세법」상 채권의 이자소득은 채권의 액면금액에서 약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액면이자과 채권의 만기상환액에서 발행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할인액으로 구성된다(「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 모든 채권의 할인액이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국채 등의 통합발행⁵⁾ 지원을 통해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채, 산업금융채권, 통화안정증권 등을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하는 경우 할인액은 과세하지 않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항).

채권의 자본차손익은 채권의 양도가격에서 취득가격을 차감하여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채권 취득 당시 이자율과 양도 당시 이자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발생한다. 양도 당시 이자율이 취득 당시 이자율보다 높을 경우 양도가격이 취득가격보다 상승해 자본차손익이 발생하고, 양도 당시 이자율이 취득 당시 이자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자본차손이 발생한다. 채권은 주식과 달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채권의 자본차손익은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 다른 국가가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자본차손익도 과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인 입법례이다. 한편 채권의 자본차손익은 실현 여부에 따라 실현손익과 미실현손익으로 구분되는데, 현행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미실현손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의 미실현 자본차손익도 과세하지 않는다. 참고로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의 이자소득뿐만 아니라 자본차손익까지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또한 법인이 국내 금융업자 및 보험업자인 경우 이자소득 및 자본차손익에 대해 0.5% 세율로의 교육세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채권시장부 2015, 374).

〈표 3〉 채권의 이자소득과 자본차손익 과세체계 및 과세시기

구 분	개 인	법 인
채권이자소득	－원칙 : 이자소득 실현 시 분리과세 －예외 : 이자소득 실현 시 원천징수 후 전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이자소득 실현 시 원천징수 후 다른 소득 합산 후 법인세 과세
자본차손익	－양도소득세 비과세(미열거소득) 단 펀드(집합투자기구)에 포함된 채권의 매매차익은 과세	－자본차손익 실현 시 법인세 과세(순자산증가설)

- 5) 국채 등 통합발행이란 국채 등을 발행할 때마다 만기일이 다르고 표면이자율이 낙찰수익률에 따라 달라져 국채종목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개별 종목당 발행금액이 감소해 유동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 추가 발행하는 경우 만기일과 표면금리를 직전 발행 국채 등과 동일하게 발행하는 제도이다(김용민 외 2021, 339).

전통적인 채권의 자본차손익은 과세하지 않지만 혼성채권인 파생결합증권의 보유 또는 환매 시 발생하는 자본차손익은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고, 전환사채 등의 양도 시에도 자본차손익의 성격이 있는 상환할증급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등 현행 「소득세법」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과세상 취급을 달리하고 있다(문성훈·이영한 2017, 187). 또한 개인이 채권을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본차손익을 과세하지 않지만, 채권형 펀드 등을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 채권의 자본차손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어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채권의 이자소득은 개인의 경우 소득발생 시점마다 지급하는 자가 14%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예납적 원천징수)해야 하며, 이자소득을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종합과세하는 것을 원칙(금융소득종합과세)으로 하고 있다(오윤·문성훈 2015, 82).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며, 채권의 이자소득과 다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금융소득)을 합산하여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완납적 원천징수)된다. 한편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도 개인의 경우와 원칙적으로 동일하지만, 개인과 달리 금융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예납적 원천징수) 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고 있다. 즉 법인은 이자소득 실현 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고,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법인소득의 일부로서 채권의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납부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정의를 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채권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국가 등,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등으로 열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채권의 이자소득이 과세되는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상 실현주의 과세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채권투자자가 이자소득을 실현하는 시점, 즉 발행법인의 이자지급시기 또는 만기에 액면이자를 지급받을 때가 되지만, 중도에 채권을 매도하여 매도대금을 지급받는 시점에도 채권 보유기간 이자소득 과세제도에 따라 원천징수된다. 채권종류별로는 무기명 공채 및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지급받은 날, 기명 공채 및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약정일에 원천징수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 및 제3호). 현행 「소득세법」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기가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현금주의를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대부분인 현실을 감안하여 원천징수 시기와 과세 시기를 맞추기 위한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채권 발행법인이 채권투자자에게 직접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권발행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가 되고, 금융회사 등이 채권을 인수, 매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채권 발행법

인 간 수권 또는 위임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금융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 및 제3항)가 된다. 한편 채권을 중도매매하는 경우 거주자가 법인에 매도하면 매수한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고,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거주자에게 매도하면 매도한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소득세법』 제133조의2 제1항)가 되며, 거주자 간 거래의 경우 거주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3. 채권 보유기간 이자소득 과세제도

채권 보유기간 이자소득 과세제도는 일정한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을 채권의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을 채권 보유자에게 귀속시키는 다음의 『소득세법』상 규정(『소득세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을 의미한다.

〈표 4〉 채권 보유기간 이자소득 과세제도 연혁

구분	소득 귀속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방법
1995년 이전	이자 수령자	이자를 지급하는 자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
1996. 1. 1. ~ 2001. 6. 30.	보유 기간별 귀속	중도매도 : 채권의 매수 또는 매도법인 이자지급 : 이자를 지급하는 자	이자지급 시뿐만 아니라 채권의 중도매도 시에도 원천징수
2001. 7. 1. ~ 2005. 6. 30.	보유 기간별 귀속	중도매도 : 원천징수의제 (세후가격으로 거래) 이자지급 : 이자를 지급하는 자	중도매도 시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음 - 15%보다 높은세율 적용자의 매도 시 차액 원천징수 - 개인이 법인에 매도 시 보유기간 분 지급조서 제출 · 이자지급 시에는 지급받는 이자전체에 대하여 원천징수
2005. 7. 1. 이후	보유 기간별 귀속	중도매도 : 채권의 매도법인, 개인의 경우 채권의 매수법인 이자지급 : 이자를 지급하는 자	이자지급 또는 중도 매도 시 각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자료 : 국세청, 2021. 『2021년(2020년 귀속)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설』 : 66.

채권 보유기간 이자소득 과세제도가 도입된 1996년 이전에는 채권 등을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격의 결정과정에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금이 전가되었다고

보고 최종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하였다.

1996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면서 실효성 확보와 채권 최종보유자 세부담 완화 등을 위해 채권을 양도하는 시점에 채권 양도자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과세하는 채권 보유기간 이자소득 과세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기존의 최종보유자에게 이자소득을 과세하는 방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면서 최종보유자의 세부담을 높이게 되어 채권보유자가 채권만기일 이전에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 보유기간 이자소득 과세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한편 2001년 7월 이후부터는 채권시장구조 선진화방안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 및 대차거래를 촉진하고 원천징수제도를 간소화하기 위해 종전의 채권보유기간 과세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이자상당액에 대해 세후가격으로 거래하는 의제원천징수제도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2005년 7월 이후는 의제원천징수제도 운영 결과 세후단가방식의 채권가격 결정이 채권가격이 복잡해지는 문제를 해소하여 채권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채권원천징수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여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시 보유기간별 실제원천징수제도로 환원하였다(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채권시장부 2015, 378).

채권 보유기간 이자소득 과세제도는 채권 원천징수제도와 증권예탁결제제도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채권의 예탁결제 관련 자료를 채권 양도 시 채권이자소득 과세정보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채권 보유기간 이자소득 과세제도를 통해 세수의 조기확보가 가능해지고 고소득자의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한국의 채권과세제도의 효과성이 제고되고, 채권 양도 시 자본차손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상황에서 채권 보유기간 이자소득 과세제도를 통해 채권 양도 시 과세하는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채권 보유기간 이자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은 「소득세법」 이자소득 과세대상인 채권 또는 증권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양도가능한 증권으로서 이자와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어음을 포함한다(「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채권보유기간 이자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일반채권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조건부증권이 포함된다. 한편 채권보유기간 이자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증권 중 예금증서에는 양도성 예금증서는 포함되지 않고, 어음은 금융회사 등이 발행 및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은 포함되지만 상업어음은 포함되지 않는다.

채권 보유기간 이자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 등의 범위에는 일반적인 채권 등 중도매도뿐만 아니라 증여, 변제 및 출자 등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이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 중개, 알선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자 등 지급의 범위에는 이자와 할인료의 지급뿐만 아니라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도 포함된다(「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과세대상인 채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받은 이자나 채권 매매차익의 크기와 관계없이 채권의 보유기간에 적용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다(「소득세법」 제193조의2 제3항). 적용이자

율은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 등의 경우에는 표면이자율을 적용하고, 이외의 채권은 표면이자율에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전환사채·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적용이자율은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적용하고, 만기보장수익률이 조건부 이자율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적용한다. 또한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 이자 등 상당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된 이후에는 채권이 아닌 것으로 보지만,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청구일 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일부터 해당 전환사채 및 교환사채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최초로 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청구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채권 보유기간은 채권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매도일 또는 이자 지급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채권을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해 거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에 의해 확인하는 방법에 의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법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때에는 해당 법인이 발급하는 채권 등 매출확인서에 의하고, 개인으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되, 공정증서는 거래당사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매매일자·채권 등의 종류와 발행번호·액면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만약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의 이자 등 상당액이 해당 거주자 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4. 신종채권 과세제도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소득 과세목적으로 신종채권인 전환사채와 교환사채를 채권으로 보아 이자지급 및 만기 시 또는 주식전환 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문성훈·이영한 2017, 176-179). 투자자가 약정만기까지 전환권 또는 교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보유기간 중 이자지급일마다 이자를 수령하고 만기에는 액면금액을 회수하게 되어 일반채권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자지급 시 또는 만기에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한편 『소득세법』은 투자자가 중도에 전환권 또는 교환권을 행사하면 사채의 중도상환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주식전환 또는 교환일에 액면이자 및 할인액과 상환할증금에 대해 채권 보유기간 이자소득 과세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다. 『소득세법』은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전환권 또는 교환권가치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 발행금액 전체를 채권

으로 보아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가 액면발행되는 경우 할인액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액면이자 수령 시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되지만, 전환사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환사채 양도 또는 전환 및 교환 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는 과세되지 않는다.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가 할인발행되는 경우에는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양도 시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 보유기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안분한 금액이 채권 이자소득 보유기간 과세제도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한편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일반채권의 이자소득 수입시기인 현금주의 또는 실현주의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액면이자 및 할인액 수취, 채권양도 등을 과세시기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상환할증금이 있는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경우는 액면발행된 경우에도 할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환할증금이 없는 경우에 비해 이자소득이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상환할증금이란 주가가 전환사채의 전환가격보다 낮아 만기일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전환사채의 낮은 이자율에 대한 보상으로 만기에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상환할증금을 만기상환 시 지급되는 원리금의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환할증금을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의2조 제3항)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이자소득 과세목적으로는 전환사채와 동일하게 과세하지만, 양도소득 과세목적으로는 신주인수권을 사채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문성훈·이영한 2017, 179-181). 신주인수권의 액면발행 또는 할인발행 시 신주인수권의 취급 및 상환할증금이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소득 과세,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전환사채와 동일하다. 다만 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보유기간 이자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한편 전환사채가 전환권을 별도로 인식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과는 다르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매자닌채권 중 하나인 신종자본증권과 조건부자본증권은 전환사채 등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 과세목적상 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지급 및 만기 시 또는 주식전환 또는 상환 시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또한 신종자본증권 등은 채권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신종자본증권 등에 내재된 전환권 또는 상환권도 전환사채 등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조화채권인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은 전통적인 주식 또는 채권 중 어느 하나로 분류하기보다는, 「자본시장법」상 구분에 따른 별도로 분류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문성훈·이영한 2017, 181-185). 파생결합증권은 원본보장 유무와 관계없이 「상법」상 사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보유 시 분배금액 및 조기 또는 만기상환 시 상환수익을 이자소득이나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만약 「소득세법」이 파생결합증권을 채권으로 본다면 분배금은 이자소득으로, 양도소득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상환수익은 과세되지 않을 것이다. 개인이 다수의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해 일부 상품에서는 이익이 발생하고, 일부 상품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없다.

한편 파생결합증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 즉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고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파생결합증권의 하나인 상장지수증권에 대해서는 상장지수펀드와의 과세 형평을 감안하여 상장지수펀드와 동일하게 과세하지 않거나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즉 국내주식이나 주가지수의 가격과 연계된 상장지수증권은 국내주식형 상장지수펀드처럼 매매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그 이외의 상장지수증권은 매매시점에 매매차익 상당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 제2호).

개인 투자자가 보유하던 상장지수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일반 펀드 및 채권과 같이 보유기간에 발생한 과표기준가격상승분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이 과표기준가격상승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이는 펀드와 같이 보유기간과세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하되, 상장지수증권의 매매로 인한 소득의 경제적 실질이 자본이득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비교과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상장지수증권이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증권인 경우에는 국내주식형 상장지수펀드와 마찬가지로 매매 시 과세하지 않고, 결산분배 및 환매를 통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보유기간과세규정에 따라 과표기준가격상승분에 대해서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IV. 현행 채권 관련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

1. 채권 보유기간 이자소득 과세제도로 인한 조세효율성 저해 및 국제적 정합성 미흡

채권 보유기간 이자소득 과세제도는 채권 양도차익이 과세되지 않는 상황에서 채권양도 시 발행할인액을 과세함으로써 양도차익 과세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조세공평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채권 보유기간 이자소득 과세제도로 인해 채권 과세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채권거

래 시마다 이자소득세가 거래비용으로 작용하여 채권투자를 위축시키는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채권 보유기간 이자소득 과세제도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조세회피 방지 및 세수의 조기 확보에는 기여했으나, 의제원천징수가 시행되는 시기에는 이자소득세가 채권가격에 반영되어 조세효율성을 저해하고 채권가격을 왜곡하는 문제점도 발생하였다.

채권 보유기간 이자소득 과세제도는 1996년부터 2001년 6월까지의 세전단가제도로 운영되었으나, 2001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의 세후단가제도(의제원천징수제도)로 변경되었으며, 2005년 7월 다시 이전의 세전단가제도로 회귀하는 등 제도 정착에 따른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러한 시행착오과정에서 금융회사 및 예탁결제기관의 채권원천징수제도 변경 시마다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력 및 비용부담이 확대되었다는 문제점도 발생하였고,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제도는 2006년 이후 세수부족 문제 등으로 부활과 면제를 반복하면서 채권원천징수제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 측면도 존재한다.

채권 보유기간 이자소득 과세제도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측면은 존재하지만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아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도 낮은 편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전체적인 세수가 축소되지 않는 차원에서 채권 보유기간 이자소득 과세제도의 단순화 또는 폐지를 통해 투자자 및 금융회사의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하고 채권과세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가 필요하다.

2. 채권 발행할인액 이자소득 과세로 인한 경제적 실질 왜곡

현행 「소득세법」은 일반채권을 중도에 매수하는 경우 중도매수 시 채권 시장이자율에 따른 할인액(시장할인액)이 아닌 채권발행 당시 할인액(발행할인액)이 추후 매도 및 만기보유 시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어 실질 이자소득이 과세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채권 보유기간 이자소득 과세제도에 따라 일반채권을 발행 당시 취득한 후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 채권매도일에 채권매도자의 보유기간 동안의 액면이자와 발행할인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액면이자만 만기 또는 만기 이전 정해진 이자지급일마다 지급받는 것이라면, 발행할인액은 만기시점에 이자를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모두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채권발행 시 취득자의 경우 액면이자와 발행할인액 모두 경제적 실질은 이자소득이기 때문에 양도 시 발행할인액을 보유기간 동안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일견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자소득을 보유기간 동안 안분하여 정액법에 따라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과세하는 것은 유효이자율법에 비해 보유기간 초기에는 이자소득을 과다계상하고 후기에는 과소계상하는 문제는 발생한다. 즉 채권의 발행할인액이 있는 경우(할인발행 시) 보유기간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자소득을 인식하면 초기에는 장부금액이 낮기 때문에 이자소득이 낮게, 후기에는 장부금액이 높아져 높게 계상되게 된다.

한편 채권을 중도에 매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추후 매도하려는 투자자의 경우 발행할인액은 최초 취득자의 이자소득이지, 중도매수자의 이자소득과는 무관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만약 중도매수 시 채권의 시장이자율이 발행 당시 시장이자율보다 상승(하락)하였다면 중도매수 시 채권가격이 발행 당시 가격보다 감소(증가)하기 때문에, 중도매수자의 추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 할인액(시장할인액)은 발행할인액보다 크(작)게 된다. 따라서 중도매수자의 실질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 할인액(시장할인액)은 발행할인액과는 관계없이 결정되는 것이다. 다만 발행 당시 채권의 시장이자율과 중도매수 당시 시장이자율이 동일하다면 중도매수자의 할인액은 발행할인액과 동일할 수 있겠지만, 채권이자율의 등락을 감안한다면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발행금액과 액면금액이 동일하여 발행할인액이 없고 액면이자 없는 채권을 중도매수한 투자자의 경우에는 중도매수 시 시장이자율과 무관하게 향후 중도매도 시 또는 만기보유 시까지 이자소득이 전혀 과세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2006년 말 판교신도시 분양 당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정부가 발행한 국민주택2종채권(일명 ‘판교채권’)은 첨가소화채권으로 만기 10년에 표면금리 0%로 발행된 채권이다(오윤·문성훈 2015, 248). 이러한 첨가소화채권의 보유자는 초기에 일정 손실을 감수하고 동 채권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금융회사 등에 매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만약 판교신도시 당첨자가 판교채권(발행금액 및 액면금액 모두 1억원, 표면금리 0%)을 매입 즉시 6천만원에 할인하여 매각된 채권을 중도매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 중도매수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할인액이 없다. 이 경우 판교채권 당첨자도 액면이자뿐만 아니라 발행할인액이 없기 때문에 중도매도 시 채권보유기간 과세제도에 따라 과세되는 이자소득은 없다. 왜냐하면 만기상환금액인 액면금액 1억원과 발행금액 1억원이 동일하기 때문에 만기상환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이인 발행할인액은 ‘0’이기 때문이다. 판교채권의 중도매수자의 실질적 이자소득, 즉 시장할인액은 판교채권의 만기상환금액과 중도매수 당시 판교채권을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인 6천만원 차이인 4천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발행할인액이 없기 때문에 추후 중도매도 및 만기보유 시 과세되는 이자소득은 없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의 시장할인액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교채권 중도매수자가 조세회피를 위해 채권취득행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위하여 조세혜택을 획득하는 tax shelter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오윤·문성훈 2015, 260). 즉 과세가 결여된 근본 원인은 당초 세법이 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현행 「소득세법」의 열거주의적 입법태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채권의 발행할인액에 조건부채권에 불과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할증금을 포함하여 전환사채의 양도뿐만 아니라 주식전환 시 이자소득으로 과세함으로써 미실현이익 또는 조건부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환사채 등의 상환할증금은 만기까지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전환사채의 낮은 이자율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상환할증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 전환사채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상환할증급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발생하지 않을 가공의 이자소득을 과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만, 과세당국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은 투자자가 전환사채 발행기업의 주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중도상환대가로 받고,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이원적 거래로 재구성하여 주식전환을 중도상환 또는 양도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환사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하여 투자의 경제적 실질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명백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한 세법상 규정이 아닌 행정해석을 통해 주식전환을 중도상환과 주식취득의 연속적인 거래로 인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한편 「법인세법」에서도 상환할증급은 주식전환 등에 따라 발생주의에 의해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할증급 지급 시 현금주의에 따라 손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업 회계기준도 일반 할인액과 달리 상환할증급을 우발이득으로 보아 현금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환할증급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3. 채권의 경제적 실질이 아닌 채권 종류에 따른 채권소득 과세

전통적 사채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등 매잔채권과 파생결합증권, 상장지수채권 등과 같은 구조화채권 등 혼성채권을 「상법」상으로는 사채(채권)로 분류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은 채권의 종류별로 이자소득과 자본차손익을 서로 다르게 과세하고 있다. 이자지급일에 고정된 액면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전통적 사채는 이자지급일과 만기에 이자지급 시 액면이자과 할인액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거나, 채권양도 시 채권양도일에 액면이자과 할인액에 대하여 채권 보유기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이자지급일, 만기, 채권양도일 이외에 주식전환 시에도 액면이자과 할인액뿐만 아니라 상환할증급에 대해서도 채권 보유기간 이자소득 과세제도를 적용한다. 「상법」상 사채(채권)인 파생결합증권은 「자본시장법」에서는 원금보장 여부에 따라 채무증권(파생결합사채)과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되지만 모든 형태의 파생결합증권이 조기 또는 만기 상환 시 이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양도 시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장지수증권은 「상법」상 사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인 상장지수펀드와 동일하게 과세된다. 즉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매매 시 과세하지 않고, 국내주식형 이외의 상장지수증권은 과표기준가 상승분과 실제 양도차익 중 적은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전통적 채권의 양도와 상환 시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과 자본차손익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지만, 전환사채 등 주식과 채권의 성격이 혼합된 혼성증권은 자본차손익 성격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주식은 일반적으로 개인투자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발행법인에 상환 시 발생하는 소득은 자본차손익으로 분류하지만, 발행법인의 자사주매입목적이 주가유지 등 추후 매각목적이 아니라 자본소각 목적인 경우 발행법인 상환 시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한편 전통적인 채권 양도 및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소득은 채권의 시장이자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

문에 실질적인 이자소득으로도 볼 수 있지만, 양도가격과 취득가격 변동에 따른 자본차손익으로도 볼 수 있다. 채권의 만기상환에 따른 발행할인액은 채권투자자가 발행 당시 취득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성격이 있지만, 중도매수투자자의 만기상환금액과 중도취득금액의 차이는 이자소득 보다는 자본차손익의 성격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 및 중도상환, 주식전환 시 발생하는 소득은 채권의 시장이자율 변동뿐만 아니라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으로 인해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주가변동이 반영되어 있어 자본차손익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조건부 채권에 불과한 상환할증금을 양도 및 중도상환 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채권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본차손익 과세를 이자소득 과세로 대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전환사채 등 주식전환 시에는 전환사채의 투자자금을 양도나 상환을 통해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전환을 통해 투자가 계속되기 때문에, 주식전환을 과세사건으로 보아 이자소득을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파생결합증권은 사전에 정해진 중도상환일이나 만기에 당초 증권이 정해진 조건이 성취될 때 상환차익을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사전에 정해진 이자지급일 또는 만기에 이자를 지급하는 전통적 사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 사채는 발행법인의 파산 등 신용위험이 없는 사전에 결정된 이자율에 따라 이자가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반면, 파생결합증권은 상환차익지급일과 지급 여부가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파생결합증권의 상환차익은 자본차손익의 성격이 강하다. 현행 「소득세법」은 파생결합증권의 상환차익을 이자소득도 양도소득도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반면, 파생결합증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상환차익과 유사하게 자본차손익의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되지 않는다.

V. 금융투자소득세의 평가 및 문제점

1.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평가

금융투자소득세하에서는 금융투자소득 개념 도입으로 금융상품 간 조세중립성이 제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소득세법」상 금융상품의 다양한 소득구분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단순화함으로써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합리적이고 이해가능한 방향으로 설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금융상품별 칸막이식 차별과세를 해소하여 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의 양도차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동일하게 과세함으로써 금융투자소득 간 조세중립성을 제고하고, 금융상품의 양도차익 간 손익통산 허용을 통해 주식, 채권, 펀드 등 개별 금융상품 차원 및 전체 투자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최종 손익임에도 과세되는 문제도 해소되었다. 또한 금융상품별, 직접투자자와 간접투자자, 투자지역별, 국내와 국외 등 상장지역별로 자본차손익이 양도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서로

다르게 과세되던 것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단순화되면서 투자자의 금융상품 과세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⁶⁾

한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으로 금융상품 간 자본차손익의 동일한 과세취급을 통해 금융상품 소득 간 수평적 조세공평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자본소득과세의 포괄화 및 단순화라는 국제적 동향(독일, 일본, 스웨덴 등)과도 부합되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으로 평가될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의 법적 형식과 무관하게 원본손실가능성, 즉 투자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금융투자상품의 소득을 동일하게 과세함으로써 수평적 조세공평이 개선되는 동시에, 투자손실의 이월공제를 통해 양도손실과 양도차익의 대칭적 과세취급을 통해 전체 투자기간차원의 과세형평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⁷⁾

2. 금융투자소득세의 문제점

가. 금융투자소득세 전반

현행 「소득세법」이 열거주의 과세체계를 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만 포괄주의 과세를 적용할 경우 「소득세법」상 체계정합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모든 소득을 포괄하여 과세(negative system)하는 미국의 「소득세법」과는 달리 한국의 「소득세법」은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과세체계(positive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의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하고 있으나, 법원은 엔화스왑예금 이자소득판결(대법원 2010두3961 판결), 골드뱅크 배당소득판결(대법원 2015두1212 판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의 과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판결하고 있다(문성훈 2020, 25). 따라서 「소득세법」상 다른 소득은 열거주의로 과세하는 데 비해 금융투자소득만 포괄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더라도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금융상품이 출현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으로 포괄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포괄주의를 적용하는 경우 과세행정비용 및 납세준용비용 등 조세순용비용이 기존의 소득세제에 비해 증가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문성훈 2020, 25). 즉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포괄주의 적용은 소득의 성격이 유사한 이자 및 배당소득의 유형별 포괄주의 확대 및 기타소득 포괄주의화 등 순자산증가설에 따른 소득세 개편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6) 문성훈, 앞의 자료, p.18.

7) 문성훈, 앞의 자료, p.19.

한편 금융투자소득세의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이자 및 배당소득, 즉 ‘금융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자본차손익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 ‘금융투자소득’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주식 투자자에 대한 투자수익 실현방법으로 배당과 자사주매입은 상호대체관계에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과 양도소득(금융투자소득)은 소득유형 변경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put-call parity 등 재무적 등가관계를 통해 이자(양도)소득을 양도(이자)소득으로 전환가능하다. 재무관리 및 금융실무 측면에서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기 때문에 소득유형별 전환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단일세율 자본이득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자, 배당, 양도소득은 구분하되 과세상 취급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을 별도의 소득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양도소득에 포함시키고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이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방법일 것이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의 구분은 유지한 채 소득 간 합산하는 방법으로 ‘금융투자소득’을 단일하게 과세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문성훈 2020, 26).

금융투자소득의 이익과 손실은 금융상품의 종류와 무관하게 통산하는 반면, 기본공제는 금융상품별로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주제라고 생각된다. 손익통산은 금융상품과 무관하게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주는 반면, 기본공제는 그룹별로 나누어서 국내상장주식 등 그룹은 5천만원, 기타 금융투자상품그룹은 250만원을 공제하고 있다. 국내상장주식 등 그룹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크게 한 것은 현재 대주주 이외의 국내상장주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포괄적 금융투자소득의 도입취지가 법적 형식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같은 과세상 취급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본공제에서도 동일한 취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금융상품 그룹별로 묶어서 기본공제를 부여하는 정책목적이 그룹별 금융소득 전환 또는 유형변경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본공제 뿐만 아니라 손익통산도 그룹별로 허용하고 점차적으로 통산범위를 넓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문성훈 2020, 29).

또한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자의 투자소득 유형 및 금융에 따라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자본차손익)’ 간 수평적 공평성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최고 45%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 금융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종합소득세율과 금융투자소득세율의 차이인 20~25%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

나. 채권 관련 금융상품의 금융투자소득세

(1) 채권 관련 금융상품 유형별 상이한 과세취급

채권 관련 금융상품과 관련되어 금융투자소득세는 채권 관련 금융상품의 「상법」이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분류에 맞추어 여전히 채권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금융투자소득 또는 금융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채권 관련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이 모두 채권등소득금액으로 분류되지 않고, 「자본시장법」분류에 따라 일반채권을 포함하여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등 메자닌증권은 채권등소득금액으로 분류되고 파생결합증권, 상장지수증권 등 구조화채권은 별도의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법인세법」상 사채 발행법인의 부채와 자본구분은 「자본시장법」이나 기업회계기준이 아닌 「상법」에 따라 사채를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채 투자자의 과세상 취급을 금융상품의 발행법인의 과세상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전체 세법의 체계적 정합성을 훼손할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사채와 파생결합증권을 「상법」상 동일한 사채임에도 불구하고 파생결합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이 파생결합증권을 원금보장 여부에 따라 파생결합사채(채무증권)와 파생결합증권으로 구분한 것은 경제적 실질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투자자보호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목적에 따라 구분한 것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되는 투자자에게 100% 원금보장이 되는 파생결합사채가 아닌 99% 원금보장되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경제적 실질 및 상품구조는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만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은 양도등소득금액과 분배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계산규정(2023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19)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은 별도의 계산규정이나 준용규정이 없기 때문에 양도등소득금액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실무상 불명확한 상황이다.

(2) 채권 관련 금융상품 자본차손익 계산의 불합리성

금융투자소득 도입으로 채권 양도차익 과세 전환으로 채권 보유기간 과세제도의 실익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채권 보유기간 과세제도는 제도의 효율성, 국제적 정합성에 문제가 있지만, 채권의 자본차손익이 과세되지 않은 상황에서 액면이자뿐만 아니라 양도차익과 경제적 성격이 유사한 할인액을 과세하여 세수확보 및 조세공평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할증금은 일반 사채의 액면이자와 할인액과는 달리 파생상품의 자본차손익의 성격이 있지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측면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재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은 기존과 동일해 이자소득과 금융투자소득이 중복적으로 과세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현재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 채권은 「자본시장법」상 채권을 준용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자소득 과세대상 채권은 특별한 정의 없이 발행주체에 따른 채권의 종류만 열거하고 있거나 채권 보유기간 과세제도 적용을 위해 일정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 채권과 이자소득 과세대상 채권이 겹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

다.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채권의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시 채권 보유기간 이자소득을 차감하고 있는데, 특정한 채권이 채권 보유기간 과세제도에 따른 채권에는 해당되지만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 채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자소득과 금융투자소득이 이중과세될 수 있다.

(3) 채권 관련 금융상품과 다른 금융상품 간 조세중립성 훼손

채권은 대주주 이외의 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비과세되다가 금융투자소득 도입으로 과세로 전환되어 세부담이 크게 증가될 것이 예상되에도 불구하고 상장주식과는 달리 낮은 기본공제를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의제취득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상장주식 등 그룹에서는 5천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채권을 포함한 기타 금융투자상품 그룹은 250만원의 기본공제만을 적용한다. 상장주식의 높은 소득공제 수준이 비과세에서 과세전환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채권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비과세되고 있었기 때문에 상장주식과 같거나 유사한 세부담 방지장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장되어 거래되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HTS(Home Trading System)를 통해서 거래가능하다. 따라서 전환사채 등 투자자가 세금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환사채로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도 상장주식의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중립성 또는 조세회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 시행 전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주식, 상장지수펀드, 상장지수증권 등 상장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평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의제취득가격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채권의 경우 주식 등과 같이 상장되어 있는 전환사채의 경우에도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금융투자소득 도입으로 세부담이 증가하거나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도입일 이전 채권을 대량으로 매도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VI. 채권 관련 금융상품 과세제도 개선방안

2023년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채권 관련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및 채권 이자소득 과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감안하여 채권 관련 금융상품에 대해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 채권 관련 금융상품의 일원화

채권의 「자본시장법」 분류가 아닌 「상법」 등 상사법상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뿐만 아니

라 상환 시 소득도 금융투자소득의 채권등소득금액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사채뿐만 아니라 주식의 성격이 있거나(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파생상품이 결합(파생결합증권)된 혼성증권이 「상법」상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 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발행법인 입장에서 자금조달수단이 「상법」상 사채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조달비용은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이자비용 등으로 손금산입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자금조달대가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법인세와 소득세 간 과세정합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모두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면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양도 또는 상환에 따라 이자소득(전통적 채권 및 메자닌채권, 파생결합사채) 또는 배당소득(파생결합증권)으로 과세되어 금융상품 간 조세형평이 왜곡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채권의 종류와 양도 또는 상환 등 자본차손익 발생유형과 상관없이 채권등소득금액으로 일원화하여 과세할 경우 납세협력비용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시 과세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채권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가 파생결합증권의 소득금액을 채권등소득금액과 별도로 계산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채권등소득금액과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산정하여 과세소득금액 계산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파생결합사채의 소득금액을 현행과 같이 이자소득으로 유지하더라도 소득금액 계산방식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신설하거나 파생결합사채소득금액 계산방식을 준용하도록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2. 채권등소득금액 계산의 단순화 및 합리화

금융투자소득세는 채권등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차익에서 채권 보유기간 이자소득과 취득가액, 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다(2023년 「소득세법」 제87조의9).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채권 자본차손익이 과세되어 제도의 실익이 크게 감소한 채권 보유기간 이자소득 과세제도를 폐지하여, 주식등소득금액 계산 시와 동일하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만을 차감한 금액을 채권등소득금액으로 하는 방식이 납세자 예측가능성 및 조세단순성을 높이고 금융상품 간 조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타당한 방식이라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전통적 채권 및 메자닌채권의 경우 양도와 상환 시 양도 및 상환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채권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금융투자소득세의 채권등소득금액으로 계산하면 된다. 이러한 방식은 이자소득 과세를 위해 채권 보유기간 이자소득 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채권의 양도금액에 취득 또는 직전 이자지급일 이후 발생이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이자도 자본차손익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에서도 보유기간 이자소득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뿐만 아니라 채권의 양도뿐만 아니라 상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이자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만약 금융소득종합과세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채권보유기간 이자소득과세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과세대상 이자소득은 발행할인액을 제외한 액면이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채권 중도매수자의 채권매도 시 발행할인액은 채권매수자의 실질적 이자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차손익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발행할인액을 채권 보유기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여 채권 양도 및 상환 시 액면이자 채권보유기간 이자소득을 과세한다면 금융투자소득세의 채권등소득금액은 채권등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채권 액면이자 보유기간 이자상당액만을 차감한 금액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본차손익을 액면이자와 기타 자본차손익으로 구분하여 액면이자자는 종합소득세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기타 자본차손익은 금융투자소득세의 채권등 소득금액으로 과세할 경우에는 현행 이자소득 범위보다 제한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이자소득의 범위 설정 시 자본차익의 성격이 있는 소득은 제외하고, 금전 사용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있는 소득으로 좁게 설정하여 조세차익거래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자소득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등을 위해 자본차익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소득유형을 변경하는 거래의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자소득의 범위를 좁게 설정하는 방식으로는 입법론적으로는 채권의 발행법인이 이자소득을 ① 무조건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이자소득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선형적으로 발생하는 ‘순수’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나머지만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세법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해석론적으로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이자소득과 자본차손익의 성격이 모두 있거나 상충하는 경우에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적으로 이자소득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를 자본차손익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채권보유기간 이자소득과세제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의 채권의 범위를 일치시켜 이자소득과 금융투자소득이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세법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이후에도 채권보유기간 이자소득 과세제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 채권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특정 채권이 이자소득과 금융투자소득이 이중으로 과세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거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채권보유기간 이자소득 과세대상 채권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 채권의 범위로 일원화 및 단순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채권과 다른 금융상품 간 조세중립성 제고

현재 채권의 자본차손익도 상장주식 등 그룹에서과 같이 비과세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채권의 자본차손익의 기본공제도 상장주

식 등 그룹의 기본공제 수준 또는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시켜 금융상품 간 조세중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만약 급격한 세부담 증가 방지보다는 자본시장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상장주식을 비상장주식보다는 과세상 우대하는 정책목적 달성이 필요한 것이더라도, 비상장채권을 제외한 채권의 종류와 관계없이 채권이 상장되어 거래되는 경우만이라도 상장주식 등 그룹과 같거나 유사한 수준이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상장주식, 상장지수펀드, 상장지수증권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의제취득가액도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거래되는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것이라면 상장채권에 대해서도 의제취득가액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금융투자소득’의 과세범위가 확대되어 자본차손익 성격의 금융투자소득과 이자와 배당소득인 ‘금융소득’의 과세상 취급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조세형평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고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즉 단순성을 갖춘 채권과세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금융투자소득과 금융소득의 과세상 취급이 일치되는 방안으로는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으로 과세되는 방안과 금융소득이 금융투자소득과 같이 과세되는 방안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지만, 어느 방안이든 금융투자소득과 금융소득의 과세상 취급이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이 공평성, 중립성, 단순성 등 조세원칙에 부합되는 세제개편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국세청. 2021. 「2021년(2020년 귀속)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설」.
-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2011. 「금융투자회사 회계처리 해설서」.
- 김용민 외. 2021. 「2021 금융상품과 세금」. 조세금융신문.
- 문성훈. 2020. 7. 15. 발표. “자본시장 과세체계개편안의 평가 및 제언”, 유동수 국회의원 주최 정부의 자본시장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세미나자료.
- 문성훈·이영한. 2017. “불확정 수익을 지급하는 혼성금융상품의 소득세상 쟁점에 관한 연구”. 조세와 법 제10권 제2호 : 167-204.
- 문성훈·임동원. 2019.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종금융상품 평가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세법연구 제25권 제3호 : 485-527.
- 박준. 2012. “상법상 사채의 속성”. 상사법연구 제31권 제3호 : 9-57.
- 신현걸 외. 2018. 「IFRS 중급회계(제6판)」. 도서출판 탐진.
- 오윤·문성훈. 2015. “금융자산거래 과세제도 개선방안 - 거래세와 소득세의 비교분석-”. 조세법연구 제21권 제1호 : 77-116.
- 오윤·문성훈. 2018. “금융상품을 이용한 tax shelter의 현상과 과제 - 미국의 tax shelter 개념과 경제적 실질원칙을 중심으로-”. 조세학술논집 제34권 제1호 : 235-266.
- 이한진. 2014.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규율체계에 대한 입법적 보완에 관한 연구”. 증권법연구 제15권 제3호 : 89-207.
- 정운오 외. 2021. 「IFRS 중급회계(제9판)」. 경문사.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채권시장부. 2015. 「한국의 채권시장」. 지식과감성.
- 한국은행. 2016. 「한국의 금융시장」.
-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2015. 「금융상품 분류 : 신종자본증권, 회계기준 길잡이 1」. 한국회계기준원. 신영사.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2015. 11.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 표시」.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Bond-related Financial Product Taxation System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

Moon, Seong Hoon* · Oh, Moon S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bond taxation system, as well as the system applicable to bond-related financial products among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to be implemented after 2023,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taxation system.

The current taxation system for bond-related financial products is : First, Impairment of tax efficiency and lack of international consistency due to the taxation of the amount equivalent to interest in bond holding period ; Second, distortion of economic substance due to income taxation of original issue discount(OID) ; Third, there is a problem of taxation of bond income according to the type of bond rather than the economic substance of the bond.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is evaluated as an improvement of the existing financial income taxation system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and enhancing tax neutrality among financial products. However, despite the introduction of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bond-related financial products are subject to different taxation by bond type. In addition, as the taxation of the amount equivalent to interest in bond holding period is maintained, there is an irrationality in the classification and calculation of capital gains on bond-related financial instruments. Moreover, the problem of tax non-neutrality between bond-related financial products and other financial products still remain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ax law should be amended to unify the classification of bond-related financial products subject to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to simplify and rationalize the calculation of bond income, as well as to improve the tax neutrality between bonds and other financial products.

〈Key words〉 bond taxation system, original issue discount, the taxation of the amount equivalent to interest in bond holding period, tax neutrality between financial products, economic substance

* Professor, Hallym University,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mooncta@hallym.ac.kr, First Author

** Professor, Hanyang Women's University, Department of Tax and Accounting, cpaos@daum.net,
Corresponding Author